

검 토 보 고 서

2024. 6. 13. (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새마포담당관 소관】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1. 안 건 명

-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4년 5월 24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24년 5월 28일(화)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검토보고]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I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잉여금			
				소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980,191,776,153	1,022,265,680,639	834,649,878,669	187,615,801,970	60,079,829,905	23,477,303,500	104,058,668,565
일회 반계	910,343,096,597	949,347,168,528	786,066,512,794	163,280,655,734	50,594,960,649	23,200,450,655	89,485,244,430
특회 별계	69,848,679,556	79,918,512,111	48,583,365,875	24,335,146,236	9,484,869,256	276,852,845	14,573,424,135

II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새마포담당관	-	12,515,480	12,515,480	-	100%

※ 징수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새마포담당관	516,833,000	422,427,025	-	-	94,405,975	81.73%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새마포담당관	94,405,975	-	8,935,000	-	-	85,470,975	-

라. 집행을 저조 사업 현황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70% 미만 기준,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새마포 담당관 (3건)	주요정책 개발	36,085,000	17,235,690	0	0	18,849,310	47.76%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9,974,000	2,265,000	0	0	7,709,000	22.70%
	창의행정 운영	3,280,000	2,234,050	0	0	1,045,950	68.11%

마.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 없음

바.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1) 예산 이용 : 없음
- 2) 예산 전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	전용금액	사유
합계	1건	200,000	
새마포 담당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 (사무관리비)	200,000	마포구 10대 정책 투표 참여자 상품권 구입 을 위해 예산 전용(기타보상금)

- 3) 예산 이체 : 없음

II

검토의견

1.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251만 5,480원으로 징수율은 100%임.
-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억 1,683만 3,000원이며, 지출액 4억 2,242만 7,025원으로 집행률은 81.73%임.
- 집행잔액은 9,440만 5,975원이며, 집행잔액원인별 금액은 예산절감액 893만 5,000원, 지출잔액 8,547만 975원임.
- 집행을 저조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집행률이 47.76%인 주요정책 개발 등 총 3건임.
-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없음
-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이체 현황은 없으나 전용은 1건, 20만원이 있음.

2.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결산

- 해당사항 없음.

3.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2023년 새마포담당관은 체계적·전략적 구정 비전 실현, 적극적인 구민의견 반영으로 소통과 혁신의 행정문화 조성 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공약사업 연차별 목표 달성률, 소송 승소율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초과달성 1, 달성 1, 미달성 1개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계획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 「지방회계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과계획 수립 후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집행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차년도에 환류하는 구조이나,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초과달성하는 사례들이 있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서면으로 보이는 목표달성률이 아닌 실제 구민에게 반영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보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타당하고 적합한지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피드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주요정책 개발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활동 및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구민들의 구정 참여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과 양질의 제안 활성화 추진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임.
-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¹⁾에 따른 재정수지균형의 적정성, ‘예산 한정성의 원칙’²⁾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³⁾에 따른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명시·사고이월, 예산의 초과지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의하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②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

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3)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 요구사항에 대한 소명과 이행이 있어야 할 것임.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